

부속서 Ⅱ
장래 조치를 위한 유보
(제10장, 제11장)

부속서 II

1. 일방 당사국의 유보리스트는 제10.9조제2항과 제1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롭거나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하여 특정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보사항을 규정한다.
 - 가. 제10.3조 또는 제11.3조(내국민대우)
 - 나. 제11.4조(현지주재)
 - 다. 제10.7조(이행요건)
 - 라. 제10.8조(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2. 각 유보사항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일반분야를 말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특정분야를 말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가능한 경우 유엔상품분류나 국내산업분류표에 따른 유보가 적용되는 활동을 말한다. 유엔상품분류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 라. **유보유형**은 유보가 이루어진,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지칭한다.
 - 마. **유보내용**은 유보가 적용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다.
 - 바. 투명성 목적상, **현행조치**는 유보에 의해 포괄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이 적용되는 현행조치를 지칭한다.
3. 유보를 해석할 때에는 유보의 모든 사항이 고려된다. **유보내용**이 다른 모든 사항들에 우선한다.
4. 이 부속서의 목적상, **유엔상품분류**는 유엔통계국 통계책자 시리즈 엠 제77번, “1991 잠정중앙상품분류”에 규정된 중앙상품분류번호를 말한다.

부속서 II 칠레의 유보리스트

- 분야: 원주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이행요건(제10.7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칠레는 한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 또는 한국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원주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특혜를 거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분야: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 유보내용: 투자

칠레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들의 해안지역의 소유권 취득 또는 투자를 위한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칠레국적의 자연인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 또는 칠레 국적의 법인은 누구나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취득 또는 지배할 수 있다. 나아가 칠레는 그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배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각 주식종별 과반수가 칠레국적의 자연인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소유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거주자라 함은 칠레에 1년에 183일 또는 그 이상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 현행조치: 국유재산의취득관리및처분관련규범 제1편(법률 1939호, 1997.11.10자 관보)

- 분야: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유보내용: 투자

현존하는 국영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에 있어서 칠레는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설립된 기업이나 투자에 대해 한국 또는 제3국 투자자들의 지배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칠레는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의 목적상,

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유지되거나 채택된 것으로 이전 또는 처분시점에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국적요건을 부여하는 모든 조치는 실행중인 조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국영기업”은 소유지분을 통해서 칠레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을 말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현존 국영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이나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 현행조치: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기본 시내 전기통신 서비스와 네트워크; 직접적인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직접적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을 포함한 디지털 전기통신 서비스의 일방향 위성방송; 부가통신 서비스와 제한적 전기통신 서비스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칠레는 다음 서비스의 국경간 무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본 시내 전기통신 서비스와 네트워크; 직접적인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직접적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을 포함한 디지털 전기통신 서비스의 일방향 위성방송; 부가통신 서비스와 제한적 전기통신 서비스
- 현행조치: 일반통신법 제1편, 2편, 3편, 5편, 6편(법률 18168호, 1982.10.2자 관보)

○ 부문: 통신

○ 하위부문: 기본 시내 전기통신 서비스와 네트워크; 직접적인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직접적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을 포함한 디지털 전기통신 서비스의 일방향 위성방송; 부가통신 서비스와 제한적 전기통신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이행요건(10.7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유보내용: 투자

칠레는 다음 서비스에 대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본 시내 전기통신 서비스와 네트워크; 직접적인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직접적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을 포함한 디지털 전기통신 서비스의 일방향 위성방송; 부가통신 서비스와 제한적 전기통신 서비스

○ 현행조치: 일반통신법 제1편, 2편, 3편, 5편, 6편(법률 18168호, 1982.10.2자 관보)

- 분야: 건설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51 건설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52 건조물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칠레는 외국 법인 또는 법적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건설서비스에 대해 거주, 등록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현지 주재 요건, 또는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조건으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안정성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현행조치:

- 분야: 교육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2 교육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칠레는 기초교육, 유치원, 취학전교육, 특수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전문기술교육, 대학교육에 있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및 보조인력과, 교육기관의 설립, 학교, 공공교육기관, 아카데미, 훈련센터, 전문기술교육기관, 대학에 대한 후원 및 모든 종류의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유보는 외국어 교육, 회사·기업·산업 교육, 교육과 관련된 기술 지원 및 자문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포함한 기술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현행조치:

○ 분야: 환경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4 하수·폐기물 처리, 위생, 기타 환경보호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칠레는 음용수의 생산과 유통, 폐수의 수집과 처분, 하수·폐기물 처리 및 폐수 처리 등의 위생 서비스는 칠레법인에 의해서만 제공된다는 요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는 칠레법인이 계약한 자문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조치:

- 분야: 어업 분야
- 하위분야: 어업관련 활동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2 어업활동에 부수되는서비스
유엔상품분류 04 어류와 다른 수산생산물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칠레는 어류 하역, 해상에서 가공된 어류의 첫번째 하역 및 칠레 항구로의 접근을 포함하는 외국 어업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항구특권).

칠레는 해상허가를 받기 위해 해변, 해변에 인접한 육지 및 해저용지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 해상허가에는 양식어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현행조치: 항해법 제1편, 2편, 3편, 4편, 5편(법률 제2222호 1978.5.31자 관보)
해상개발권관련규정(법률 제340호, 1960.4.6자 관보)
해상개발권관련규정(법령 제660호, 1988.11.28자 관보)

- 분야: 정부재정
- 하위분야: 증권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1112 정부금융 및 재정서비스의 행정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 유보내용: 투자

칠레는 칠레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된 채권, 재무성 증권, 또는 다른 종류 유가증권의 한국 국민에 의한 취득,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분야: 소수집단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이행요건(제10.7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칠레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소수집단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분야: 전문·기술 및 특별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이 중앙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분야에 대해 국적, 영주 또는 현지주재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유지할 경우, 칠레는 한국이 중앙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용하는 동일 분야에 그리고 동일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서비스공급자와 관련된 어떠한 동등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현행조치:

○ 분야: 사회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13 강제적 사회보장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2 교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3 보건 및 사회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이행요건(제10.7)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칠레는 법 집행, 교정서비스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다음 사회 서비스들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공교육, 공공훈련, 보건의료 및 아동보호.

○ 현행조치: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리스트

- 분야: 모든 분야
- 하위분야: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 유보내용: 투자

비거주자는 다음 경우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특정금액을 초과하여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대출 또는 원화표시증권을 차입하는 경우
2. 단기원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명시된 특정거주기업에 단기신용을 제공할 경우 또는 다른 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담보에 기초하여 거주자나 비영리 기관에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거주자로부터 외화표시 자금,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을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가 파생상품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특정거래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행조치: 외국환거래법(법률 제6277호, 2000.10.23)

- 분야: 모든 분야
- 하위분야: 방위산업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이행요건(제10.7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방위산업체의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행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법률 5559호, 1998.9.16)

- 분야: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0.3조)
-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칠레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현행 법령상 조치에 추가하여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토지취득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1. 외국인·외국 법인·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는 한국 영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벌칙이 부과된다. 특정 토지(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생태계보호구역)의 경우,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처벌될 수 있다.
2. 상속·경매 또는 기타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 한국 영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 국민, 법인 또는 단체가 국적변경 후에도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국적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현행조치: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제6조(법률 제5656호, 1999.1.21)

- 분야: 모든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이행요건(제10.7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 유보내용: 투자

전기, 가스산업과 같이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보유하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은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한국은 칠레인 투자자나 제3국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설립된 기업이나 투자를 통제하는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은 이행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의 목적상,

1.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유지되거나 채택된 것으로, 이전 또는 처분시점에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국적요건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실행중인 조치로 간주된다.
2. 공기업은 소유지분을 통해서 한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오로지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이나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을 위해 만들어진 어떠한 기업도 포함한다.

- 현행조치: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방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24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5300 라디오, 케이블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112 영화 또는 비디오 테잎 제작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113 영화 또는 비디오 테잎 배급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이행요건(제10.7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은 디지털방송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한국 위성방송(직접위성방송, 디지털위성방송, 디지털 라디오방송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성방송은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포함한다.

- 현행조치:

- 분야: 교육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2 교육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이행요건(제10.7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은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 기타 교육·훈련분야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원양성기관, 4년제 대학을 제외한 기타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외국인에 의하여 설립되는 대학의 수는 광역시 또는 도별 1개로 제한한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서의 대학의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현행조치:

- 분야: 전력산업
- 하위분야: 송전, 배전 및 전력판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700 에너지 배분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한국은 주변국가와의 송전, 배전 및 전력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 현행조치:

- 분야: 환경서비스
- 하위분야: 음용수의 생산 및 유통
오염토양의 처리 및 복원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8000 자연수
유엔상품분류 94060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 제외)
유엔상품분류 9409 기타 환경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 제외)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한국은 하위분야에 규정된 환경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현행조치:

- 분야: 어업
- 하위분야: 어업관련 활동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200 조업관련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조업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게 조업을 위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조업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한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한국 국민에 대하여 투자하고, 관련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 또는 한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한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배타적경제수역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행조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
관한법률 제4조, 제5조(법률 제5809호, 1999.2.5)
수산업법 제5조(법률 제5977호, 1999.4.15)

- 분야: 가스산업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131 송유관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한국은 주변국가와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운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현행조치:

○ 분야: 소수집단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이행요건(제10.7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소수 집단에게
권리 또는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
할 권리를 유보한다.

○ 현행조치:

- 분야: 원자력산업
- 하위분야: 원자력발전
원자력연료 제조 및 공급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자력관련 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33710 원자력연료 성분(카트리지, 방사선 비조사)
유엔상품분류 33720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 성분(카트리지, 방사선 조사)
유엔상품분류 42310 원자로
유엔상품분류 88450 수수료나 계약에 따른 코크스·석유정제제품 및 원자력연료의 제조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정부는 원자력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외국 투자자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원자력연료의 제조와 공급,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같은 원자력발전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건설, 운영 또는 품질검사 서비스는 과학기술부의 감독하에 관리된다.

원자로가 장착된 외국 선박은 한국 항구에 출입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의 통지, 등록, 허가, 감독을 받아야 한다.

- 현행조치: 전기사업법 제12조, 제62조, 제96조(법률 4214호, 1990.1.1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5559호, 19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17474호, 2001.12.31)
원자력법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34조, 제43조, 제57조, 제
64조, 제76조, 제86조, 제90.4조(법률 6472호, 2001.5.24)
원자력법 제34조, 제65조, 제76조, 제86조, 제90.4조(법률
5820호, 1999.2.8)

- 분야: 전문서비스
- 하위분야: 법률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1 법률서비스(1997년 2월 국제연합 통계위원회가 승인한 개정 상품분류하의 중재 및 조정 서비스 포함)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조, 제11.3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은 법률서비스분야에 있어 소유, 동업,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의 국적, 기타 차별적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변호사 및 법무사로 개업하려는 자는 개업하고자 하는 지방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공증인은 개업
하고자 하는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
해야 한다.

- 현행조치: 변호사법 제21조(법률 6207호, 2000.1.28)
법무사법 제14조(법률 제5180호, 1996.12.12)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제17조(법률 제723호, 1961.9.23)
변리사법 제5조(법률 제5826호, 1999.2.8)

○ 분야: 사회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13 강제적 사회보장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3 보건 및 사회 서비스

○ 유보유형: 내국민대우(제10.3, 제11.3조)
이행요건(제10.7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제10.8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한국은 공공 목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한국 영역 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면허가 발급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수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수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 영역 내에 수의병원을 설립하고,
2.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한다.

○ 현행조치: 의료법 제30조(법률 제5454호, 1997.12.13)
수의사법 제17조(법률 제2739호, 1974.12.26)

- 분야: 운송서비스
- 하위분야: 육상운송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11 철로운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12 기타 육상운송서비스
- 유보형태: 내국민대우(제11.3조)
현지주재(제11.4조)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한국은 육상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현행조치: